의 안 번 호			제	ই
의		결	2021.	• •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재 난 적 의 료 비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나,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,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 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 의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9. 8. ~ 10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2호 중 "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를 "제11조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80"으로, "(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)"를 "(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)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아니한다"를 "않는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아니하는"을 "않는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(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(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)을 지급한다.
- 1.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
- 2.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

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3.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자의 지원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다음 각 호	제6조(실무위원회) ①
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	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	
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	
"공단"이라 한다)에 실무위원회	
를 둔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	
공단 이사장이 공단 분사무소	
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	
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11</u>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	2.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
<u>단서</u> 에 따른 초과지급 인정	단서
여부에 관한 사항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원기준) ① 법 제12조에	제11조(지원기준) ①
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	
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	
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	
액(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	
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)의 <u>100</u>	<u>100</u>
<u>분의 50</u> 에 해당하는 금액 <u>(10원</u>	분의 80(10원
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	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)
<u>다)</u> 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금액	

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를 지급하지 <u>아니한다</u>. 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

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

 금액을 넘지 <u>아니하는</u> 범위에서

----- 않는다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(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비율에 해당하는 금액(10원 미만은계산하지 않는다)을 지급한다.
- 1.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

 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

 로 인정한 사람
- 2.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- 3.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
- ----- 아<u>누</u> -----

지급한다. 다만,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사람의 질환 특성, 가구 여건,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있다.

1. · 2. (생략)

·
1.•2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

연 락 처

(044) 202 - 2683